

송도 아리스타 프라임 입주자모집공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관련 안내 사항

■ 국토교통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관련 협조 요청」에 근거하여 송도아리스타 프라임은 사이버 견본주택을 운영(www.songdo-aristaprime.com) 합니다.

- 본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분양일정,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시행위탁사 홈페이지 (www.songdo-aristaprim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기간 내 입장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출입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마스크 미착용, 손 소독제 등 예방 절차에 불응할 경우

*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를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코로나19 감염증상이 있거나,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청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견본주택 관람, 아래에 기재된 당첨자 서류접수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을 실시할 예정이오나, 간혹 통화량이 많을 경우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전화상담(1833-5626) 시 신청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 전달로 인해 청약 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청약과 관련된 전화상담은 청약 신청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이며, 입주자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관련 서류 등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및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5. 24.)입니다. (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연수구, 인천 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구분	주택소유 여부	비고
1순위 청약자격 대상자	무주택자, 1주택자	세대주
가점제 대상자	무주택자	세대주
추첨제 대상자	1주택자	세대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2주택자 이상	세대주, 세대원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기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재당첨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	적용기간 (당첨일로부터)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6호)	10년간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 제7호)	7년간		
-토지임대주택(제1항 제5호),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제3조 제2항 제7호 가록)	5년간		
-이전기관종사자 특별공급 주택(제1항 제2호),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제1항 제4호), 기타당첨자(제3조 제2항 제1·2·4·6·8호)	과밀역제권역	전용면적 85㎡ 이하	5년
		전용면적 85㎡ 초과	3년
	그외	전용면적 85㎡ 이하	3년
		전용면적 85㎡ 초과	1년

* '2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재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재당첨 제한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 24.)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기타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에 거주 (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2019.05.24. 이전부터 계속 거주) 거주자가 우선합니다.
- 본 아파트는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시행되는 구역에 위치하는 택지개발지구로서 청약 순위별로 공급 세대수의 50%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한 자를 대상으로 우선 공급하며, 나머지 50%를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를 대상으로 공급합니다.
단, 동일 청약 순위 내에서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접수결과 미달인 경우 미달된 세대는 수도권 지역거주자에게 공급되며, 수도권 지역거주자 신청접수 결과 미달 시에는 잔여 물량을 각각 상기 거주 지역별 배분 비율을 적용, 배분하여 차순위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인천광역시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대상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이상)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니 청약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이상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09.18.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등"은 분양권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른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경제자유구역)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블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 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되신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マイ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주택의 세대주 자격을 갖춘 청약자(배우자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되는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같은 주택은 둘 다 부적격(재당첨 제한),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당첨 인정, 후당첨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청약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1주택(분양권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 조건을 승낙하여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www.songdo-aristaprice.com)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시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서 신고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인 인천광역시 연수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주택 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담보 인정 비율(LTV), 총부채 상환비율(DTI)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일(5년을 초과하는 경우 5년으로 한다)까지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본 아파트의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계약세대의 경우 「주택법」 제64조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규정에 의거 최초로 주택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5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 본 아파트는 청약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 공급하는 분양이 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의 재당첨 제한기간 규정이 적용되어, 기분양주택 당첨여부에 따라 본 아파트의 청약이 제한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조정대상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전매금지 및 재당첨제한 등의 사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시점 관련 법규의 적용을 받으며, 향후 관련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매금지, 재당첨제한,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및 가점제 당첨 제한 등의 사항은 향후 관계 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공급질서 교란자에 대해서는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의심이 되는 당첨자에게 문자, 전화 등의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으며, 미수신 또는 수신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당첨자 본인에게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 등 을 참고하시어 계약 일정 등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의 지역은 6개월, 위축지역은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특별광역시·청약과별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에 해야 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5조 및 제36조에 따른 특별공급의 경우로서 공급물량이 적거나 청약 관심도가 낮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5일 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기관주체, 경제자유구역,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021년 6월 3일(목)	6월 4일(금)	6월 7일(월)	6월 11일(금)	6월 12일(토) ~ 6월 14일(월)	6월 23일(수) ~ 6월 25일(금)
방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www.applyhome.co.kr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등기우편 또는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견본주택 방문 (10:00 ~ 17: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10~14시)▪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ul style="list-style-type: none">- PC : www.applyhome.co.kr- 모바일 : 스마트폰앱 <p>*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p>			<p>송도아리스타 프라임 견본주택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54번지</p>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I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건축과-8206호(2021.05.20.)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2-6,7번지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3층~10층 1개동 총 90세대 중 일반공급 43세대

[특별공급 47세대(일반[기관추천] 8세대, 경제자유구역 8세대, 다자녀가구 8세대, 신혼부부 16세대, 노부모부양 2세대, 생애최초 5세대 포함)]

■ 입주시기 : 2022년 12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예정)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타입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 등)	계약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경제 자유 구역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357	041.1000A	41A	041.1000	021.3500	062.4500	037.0300	099.4800	020.4700	84	8	8	8	16	2	5	47	37	0	
		077.0700C	77C	077.0700	040.3600	117.4300	069.3400	186.7700	038.3900	2	0	0	0	0	0	0	0	0	2	0
		080.3000D	80D	080.3000	041.8500	122.1500	072.2500	194.4000	040.0000	2	0	0	0	0	0	0	0	0	2	0
		082.5300B	82B	082.5300	042.2800	124.8100	074.2700	199.0800	041.1100	2	0	0	0	0	0	0	0	0	2	0
		합계								90	8	8	8	16	2	5	47	43	0	

※ 면적 환산방법(공급면적→평)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면적합산 시 소수점 5자리 이하에 대한 반올림 값이 적용되어 합산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미첨약 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첨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모형들과 안내문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및 홈페이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 편집 및 인쇄 과정 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세대, 원)

주택형	타입	층	호수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종도금(50%)					잔금(40%)
					대지비		건축비	부가가치세		계약시	1회(10%)	2회(10%)	3회(10%)	4회(10%)	5회(10%)
					1호	2~3호	4호	5~8호		2021.09.10	2021.11.10	2022.01.10	2022.03.10	2022.05.10	입주지정일
041.1000 A	41A	3층	1	1	171,870,000	165,130,000	-	337,0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33,700,000	134,800,000
			2	2	192,780,000	185,220,000	-	378,0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51,200,000
			1	4	208,794,000	200,606,000	-	409,40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163,760,000
			4	1	213,894,000	205,506,000	-	419,40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41,940,000	167,760,000
			1	1	208,794,000	200,606,000	-	409,40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40,940,000	163,760,000

■ 주택형 표시 안내

주택형	041.1000A	077.0700C	080.3000D	082.5300B
건본주택 등 약식표기	41A	77C	80D	82B

※ 주택형의 구분은 입주자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를 위하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의 약식표기는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 설계도서와 동일하게 주택형별로 건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제작물도 동일하게 표현되었으나, 청약 및 계약 시 상기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유의사항

- 본 주택은 정부가 출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이며,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또한, 본 아파트 개발사업의 시행사 및 분양지로서의 권리를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시행권 인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 절차 없이도 시행자(분양자)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되는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 원료하여야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부적격자로 판명됨으로 인한 청약예금 통장 사용 불가 등의 불이익에 대해서는 사업주체, 시공사, 분양마케팅사, 수탁자 등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음.)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기타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각 주택형별 지하주차장 및 지하피트에 대한 금액이 상기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 통합)가 포함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 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각 주택형별 마이너스옵션 선택은 청약당첨자 분양 계약 시 선택사항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과 추가 선택품목 [플러스옵션, 가전옵션 : 스타일 옵션, 개별 가구 옵션, 현장형 시스템에어컨, 환기형 공기청정 시스템, 주방 가전 등] 비용이 포함되지 아니한 가격이며,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품목은 계약자가 선택하여 계약하는 사항으로 분양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동별, 층별, 호수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접수받아 동·호수를 추첨하여 추첨결과에 따라 각 동별, 층별, 호수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본 사업부지는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이 복합적으로 계획되어 있어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용도별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공동주택 각 형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
- 세대당 지분 계산과정에서 남는 오차면적은 일부 세대에 포함될 예정이며, 이로 인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향후 소유권 이전등기 또는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의 증감이 있을 수 있고, 소수점 이하 면적 변경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조정하지 않습니다.
- 기타 공용면적 또한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면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전용면적은 안목치수로 산정하며, 그 외 면적은 중심선 치수로 산정합니다. (단,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 조정으로 등기면적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근린생활시설 (단지 내 상가)은 별도 분양대상으로 상기 공급대상 및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 확장(일부 발코니, 주방 발코니, 대피공간 등은 제외)기준으로 시공되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하신 후 계약조건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아 입주하는 경우,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의 입주예정자가 사업주체가 정한 입주예정일까지 입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은 입주일에 전체입주금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으며, 잔금의 구체적인 납부시기는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에 따라 사업주체와 당첨자 간에 체결하는 주택공급계약에 따라 정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분양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하며, 잔금은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일 종료 전까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선납할인은 상기 중도금 약정일에 따라 계산됩니다. (선납할인율은 분양계약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및 잔금 선납 시 선납금액은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잔금에 대하여는 입주지정기간 개시일을 기준으로 선납할인하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잔금에 대한 할인료 및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중도금 금융대출을 원하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 체결 후 지정된 대출 협약은행과 별도의 중도금대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세부적인 대출신청일정 등은 별도안내 예정)
단, 대출 미신청자와 본인의 부적격 사유로 인하여 대출이 불가한 계약자는 상기 납부일정에 맞추어 본인이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광고,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 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41A	합계
일반(기관추천)	국가보훈처	국가유공자	1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1
	중소기업 근로자	1	1
	장애인	인천광역시	2
		경기도	1
		서울특별시	1
경제자유구역		8	8
다자녀가구	인천광역시 거주자 (50%)	4	4
	서울특별시, 경기도 (50%)	4	4
신혼부부		16	16
노부모부양		2	2
생애최초		5	5
합계		47	47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와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접수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특별공급(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생애최초, 노부모부양 등)의 청약 접수는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함 단, 고령자 또는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에 한하여 견본주택에서 접수 가능 (은행 창구 접수 불가) 인터넷 청약 접수는 청약통장 가입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하고, 청약접수일에 청약 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 없이 청약이 가능함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종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료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 (부부 포함)이 종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경제자유구역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필요함) <p>※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p>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p>※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p>

【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

구분	인천광역시 (또는 기타 광역시)	서울특별시 (또는 부산광역시)	경기도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기타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특별공급 당첨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잔여물량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 미적용, 제28조에 따라 일반공급에만 적용되므로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음)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 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 (소형·저가 주택 포함)을 무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당첨자 발표 시 개별 통지는 하지 않으며 당첨자 명단에 대한 전화문의는 최소 안내 등의 혼동 방지를 위해 응답하지 않으니 양해 바랍니다.
- 당첨자선정과 동·호수 추첨은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공급 당첨 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자 본인이 특별공급 간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처리 합니다.
- 주택 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서류 제출 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확인하며,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원 (분리세대 등)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 기간이 성이 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분양 일정 상 계약일 이후라도 아파트 당첨 취소 및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 신청 가능)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 (한차례의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5.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함)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추천기관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용과
- 장애인 : 인천광역시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경기도청 복지국 복지사업과, 서울특별시청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 지원지원과
-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유공자 등 : 국가보훈처 인천지방보훈청 복지과
- 중소기업 근로자 :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행정지원과 조정협력과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 (동·호배정)에서 제외되어 계약불가]

-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세대

• 대상자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5.24.)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외국인의 경우에는 무주택자를 말함)으로서 특별공급 해당 기관장이 선정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2항 제5호 및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기업 종사자 등에 대한 주택 특별공급 세부기준」에 해당하시는 분.

1. 해당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외국인투자기업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을 말한다.)의 종사자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시·도지사의 확인을 받은 자.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의 교원 또는 종사자.

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에 따라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종사자.

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소재하는 국제연합기구,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른 국제협력기구, 그 밖의 국제기구 종사자.

라. "의료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개설된 외국의료기관을 말한다.

마. "교육기관"이라 함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설립된 외국교육기관 또는 국제고등학교를 말한다.

• 신청 및 당첨자 선정방법

1.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구비서류를 갖춰 먼저 사업주체에 신청하여야 하며, 사업주체는 특별공급 신청자 현황을 작성하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제출합니다.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따라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당첨 확정자 및 예비자가 선정되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서 사업주체에 대상자를 통보합니다.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은 사업주체에 통보된 자만 특별공급 신청일에 인터넷접수가 가능하며, 대상자 (당첨확정자 또는 예비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반드시 특별공급 접수일에 인터넷첨약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청약 미신청시 계약불가)

4.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은 해당 추첨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따라 대상을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하므로 사업주체 및 전산관리지정기관 (한국부동산원)은 당첨자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소형·저가주택 소유 시 유주택자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9호 미적용)

• 신청자 구비서류

구분	구비서류
공통 서류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신청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신청인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무주택서약서,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신청서 (견본주택 비치), 청약통장 가입 증빙확인서류, 경제자유구역 내 근무경력 증명서
내국인	신분증,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일 경우 배우자 등본 포함), 주민등록표초본, 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사실증명서

• 유의사항

1. 「주택법」 제 64조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등) 및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전매행위 제한기간 및 전매가 불가피한 경우)의 규정에 준용하여, 특별공급대상자로 확정되어 주택을 공급 받은 자가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가. 전매제한 기간 내에 해당기업 등에서 다른 지역으로 전출 또는 퇴직하는 경우.

나. 제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의 사실이 판명되거나, 주택소유사실 은닉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은 경우.

2. 특별공급 대상자 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그 주택에 대하여 당초 계약금액으로 환매하여야 함.

3.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의 신청은 특별공급 청약접수 전 사업주체에 신청서를 제출 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의 대상자 적합여부 확인을 받은 자가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여야 합니다.

4. 특별공급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당첨자"로 간주되며, 신청 당시 제출한 서류 및 주택소유 등으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에 명시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5.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청약 신청 자격에 대한 심사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에 당첨자로서의 일체의 권리는 소멸되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5.24.)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 (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 (만 19세 미만)이어야 함.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함.
- 자녀수에는 태아나 입양자녀도 포함됨
- 태아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할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경쟁이 있을 경우 인천광역시에 2년 이상 거주자 우선)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또한, 동일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 (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함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인천광역시 우선공급 물량에서 잔여 물량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신청미달이 발생되는 잔여 물량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함.
- ※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가 5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에서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와 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인천광역시 거주자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인천광역시 거주 신청자 우선 공급은 적용되지 않음.
- ※ 기타 본 공고문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및 관련 법령에 따름.

•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배점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되며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
		1년 이상 ~ 5년 미만	10	(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는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신혼부부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5.24.) 현재 수도권(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기간이 7년 이내(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동일인과 이혼 후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2018.12.11. 전 기준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청약 가능(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지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임양의 경우 임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임양관계증명서 상 임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 입주 전 파양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임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출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임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준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해당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제1순위,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고기일 (2021.05.24.) 현재 세대수의 50%를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함.

② 미성년 자녀 (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 (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 (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 (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 (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030,161원~ 7,236,192원	7,094,206원~ 8,513,046원	7,094,206원~ 8,513,046원	7,393,648원~ 8,872,376원	7,778,024원~ 9,333,628원	8,162,400원~ 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 이하	6,030,161원~ 8,442,224원	7,094,206원~ 9,931,887원	7,094,206원~ 9,931,887원	7,393,648원~ 10,351,106원	7,778,024원~ 10,889,232원	8,162,400원~ 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 이하	7,236,193원~ 9,648,256원	8,513,047원~ 11,350,728원	8,513,047원~ 11,350,728원	8,872,377원~ 11,829,835원	9,333,629원~ 12,444,837원	9,794,880원~ 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벌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전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서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 (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하므로 전년도 01월 0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5.24.)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 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소형·저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자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 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름.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7% 범위) : 5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5.24.)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 (세대에 속한 모든 분이 과거 주택소유 사실이 없어야 하며,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 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제28조 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가 있는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실적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이 포함된 분은 소득금액증명의 총결정세액이 "0"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년도 납세사실 증명을 함께 제출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함

※ 소형·저기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

※ 입주자자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종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①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의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 및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②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배우자가 주민등록이 분리된 경우 세대

분리된 배우자 및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공급신청자의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하며, 임신 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III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신청자격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5.24. 현재 인천광역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기타 지역)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p> <p>※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2순위로만 청약 가능) - 청약 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종복신청이 불가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자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종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세대주)와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 (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청약자 (세대주)와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은 부적격 (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④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인천광역시 및 수도권 (서울특별시, 경기도)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기타 지역)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합니다.</p> <p>※ 청약 신청 시 아래 "청약 신청 유의사항",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청약신청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 시 세대주가 아닌 자,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2순위로만 청약 가능) - 청약 신청 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종복신청이 불가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자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종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 (세대주)와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 (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 (특별공급+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일반공급)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청약자 (세대주)와 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자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은 부적격 (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 및 2순위 포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 제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민영주택)인 경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신청 접수 시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에 의하여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③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해서는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④ 청약 시 기입한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 등)의 오류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으므로 정확하게 기입하여야 하며, 청약 이후 변동 사항 발생 시 당첨자는 견본주택에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자축 순위별 요건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 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주택	1순위	전용면적 85㎡ 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자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해당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자 /
		1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1순위 청약이 제한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세대주가 아닌 자 ②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③ 2주택 (분양권등 포함)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④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4개월 미만, 지역별, 면적별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충족하지 못한 자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기타지역] 인천광역시 2년 미안, 서울특별시, 경기도 거주자
		2순위 청약제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과거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에서 당첨)에 의거 과거 재당첨 제한 대상 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 기준 금액(「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 제3항 별표2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관련)

구분	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비고
전용면적 85㎡ 이하	250만원	300만원	200만원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해당구간의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예치금액의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전용면적 102㎡ 이하	400만원	6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700만원	1,0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0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1)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2)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주택공유지분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3)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 (공유지분 포함)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4) 주택매매 등 처분사실은 건물등기부등본 상 등기접수일 (미등기주택은 건축물대장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5)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 (사업주체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

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대상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 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속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

6.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가정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멀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멀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한다.

9. 소형·저가주택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 소형·저가주택 가격 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공시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 (비수도권 8천만원)이하인 1호 또는 1주택 (소형·저가주택)소유에 대해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분은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 중형 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경우

- (현재 : 무주택자) :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

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IV

신청일정 및 장소, 구비서류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신청일시	신청방법	신청장소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06. 03.(목) (청약Home 인터넷 : 08:00~17:30)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일반공급	1순위	2021.06. 04.(금) 08:00~17:3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1.06. 07.(월) 08:00~17:30		• 대행은행 창구

• 본 아파트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합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나 네이버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청약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등에 대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허용됩니다.(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장애인 등)등에 대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 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신청 시 접수된 서류를 계약 시 구비서류로 사용할 수 없으니, 계약 시 별도로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 간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방문 청약 신청 접수 시 특별공급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 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전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 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 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전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 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활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 신청」 ⇒ 「APT 청약 신청」 ⇒ 「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준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가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 「세대구성원 동의」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 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 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인감증명 방식</th> <th style="text-align: center;">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 <td>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td></tr> <tr> <td colspan="2" style="text-align: center;">※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td></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 (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사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 특별공급 방문 접수 시 구비서류(인터넷 청약 신청자는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에 한해 당첨자발표일 이후 계약체결 전 서류 제출기간에 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① 특별공급신청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청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input type="radio"/>	②개인정보활용동의서/무주택서약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비치
	<input type="radio"/>	③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 확인서 발급 • 공고일 익일부터 발급 가능 (신청하고자 하는 특별공급 신청용으로 발급) • 국가유공자, 철거민, 도시재생부지제공자, 장애인 특별공급은 제외
	<input type="radio"/>	④신분증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2020년 12월 21일 신규발급분 제외)
	<input type="radio"/>	⑤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도 : 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input type="radio"/>	⑥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공급신청 시 제출생략
	<input type="radio"/>	⑦주민등록표등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⑧주민등록표초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⑨가족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⑩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 (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랍니다.)
	<input type="radio"/>	⑪출입국사실증명원 및 여권사본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input type="radio"/>	⑫출입국사실증명원 및 여권사본	세대원		
	<input type="radio"/>	⑬복무확인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정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input type="radio"/>	① 해외채류 증빙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 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아래사항 반드시 제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비자 발급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p>*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p>
	<input type="radio"/>	②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권, 문서 및 재발급으로 제3국이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제3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input type="radio"/>	③주민등록표등본	본인 및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등록 및 변경일자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p>*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p>
	<input type="radio"/>	④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모두 포함하여 "상세" 발급. <p>*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및 성명 등 전부 표기 (본인 및 세대원 등 모두)</p>
	<input type="radio"/>	⑤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배우자의 출생년도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지정하여 발급
일반(기관추천)	<input type="radio"/>	① 특별공급 대상 증명 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및 경제자유구역 특별공급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①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인터넷첨약('청약Home')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②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③ 주민등록표등본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④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⑤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⑥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⑦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
	○	⑧임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임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양의 경우
	○	⑨혼인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⑩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①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	②혼인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③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④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⑤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⑥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자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인의 주민등록표 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⑦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직계 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	①혼인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혼인신고일 확인을 위하여 '상세'로 발급
	○	②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③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	④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⑤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	⑥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	⑦임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⑧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치)
생애최초 특별공급	○	①특별공급신청서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견본주택 비치
	○	②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③혼인관계증명서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통일 등본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의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	④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

		⑤소득세납부 입증서류	세대원 본인	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⑥소득 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제3자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사항	○	①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청약자	•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본인발급용만 인정
	○	②위임장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견본주택에 비치
	○	③대리인 신분증, 인장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원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 상기 소득입증관련 서류 외 대상자에 따라 추가서류 요청을 할 수 있음.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의료)보험증이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 (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 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해당여부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건강보험공단
		자영업자	① 사업지등록증 사본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소득금액증명(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②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및 납세사실 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 직장 ③ 해당 직장/세무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p>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p> <p>※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 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제출</p> <p>② 재직증명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명시하여 발급</p>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 해당 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 금년도 전직자	<p>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 소득을 추정</p> <p>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p>	①,② 해당 직장
	전년도 전직자	<p>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 (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 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p>	①,② 해당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p>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p>	① 해당 직장
자영 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p>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p>	①,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p>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신청용 가입내역확인서 및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증명서 또는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임주자모집공고일과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p> <p>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p>	① 국민연금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p>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원본)</p>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p>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② 당해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위촉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직인날인)</p>	① 해당 직장/세무서 ②,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행정복지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p>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신청용가입내역확인서)</p>	① 해당 직장 ② 국민연금관리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각서(견본주택에 비치)	① 견본주택 비치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p>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p>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p> <p>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순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입주자자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자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자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어,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생애최초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기관추천특별공급, 경제자유구역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공급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인천광역시 2년 이상 거주하는 자에게 50%를 우선 공급하고, 나머지 50%는 인천광역시 거주자중 우선공급에서 낙첨된 자를 포함하여 인천광역시 2년 미만 거주자,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경기도)에게 공급합니다.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 없이 추첨으로 선정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는 견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견본주택 방문접수 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견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 공급 당첨은 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이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되어 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약 시 신청자의 속으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신청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신청취소가 가능하며, 청약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상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 대구, 대전, 광주, 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내 공급 주택은 500% 적용)

V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06.11.(금)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6.23.(수)~2021.06.25.(금) (10:00~17: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54번지)
일반공급	1순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2021.06.11.(금)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 및 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06.23.(수)~2021.06.25.(금) (10:00~17:00) 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54번지)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계약체결 이후라도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계약은 취소됩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 방법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는 연락처 변경 시 건본주택에 본인의 연락처 (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합니다. (통보하지 않을 경우 연락처 및 주소 불명 등의 사유로 예비입주자 공급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수와 미계약 동·호수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계획입니다.
- ※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향후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공급신청한 다른 주택의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 선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한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여부는 인터넷 홈페이지(www.songdo-aristaprime.com)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전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06.11.(금) ~ 2021.06.20.(일) (10일간)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p>*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 또는 청약소통방 > 당첨사실 조회하기(아파트)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p>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06.11.(금) 08:00 시 이후 (제공일시는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 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서류 제출 안내

당첨자는 아래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첨자 서류제출 기간 내에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계약 진행이 불가합니다.

구분	내용
대상	정당 당첨자 (일반공급 / 특별공급)
제출기간	2021.06.12.(토) ~ 2021.06.14.(월) / 10:00 ~ 17:00 / 3일간
제출방법	견본주택 방문접수 및 등기우편 접수 (우편접수의 경우 도착일 기준)
제출장소	송도아리스타 프라임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54번지)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서류 제출 방법은 방문 제출이 아닌 등기우편 제출 등의 방법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2021.05.24.)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 (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자격확인서류 미제출'로 부적격 처리됩니다.
-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의 서류는 분양주체에서 6개월 간 보관 후 일괄 파기합니다.
-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제출기간에 필히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 계약포기로 간주됩니다.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봅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 당첨자 중 인터넷 신청자에 한하여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시어 당첨자 서류 제출일에 견본주택으로 제출(방문접수, 우편접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 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특별공급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①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input type="radio"/>	②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③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④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⑤출입국사실증명원 및 여권사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input type="radio"/>	⑥출입국사실증명원 및 여권사본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input type="radio"/>	⑦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배우자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상기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사항 참고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⑧복무확인서	본인	• 수도권외 지역에 거주하는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이 수도권 거주자로 청약하여 청약 신청 및 당첨된 경우	
일반 (기관추천) 경제자유구역	<input type="radio"/>	①특별공급 대상 증명서류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로 접수함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①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상 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②주민등록표등본	자녀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③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 한부모가족으로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④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 등재된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를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⑥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⑥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자
	<input type="radio"/> ⑦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input type="radio"/> ⑧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 또는 해당 시·도 거주기간 점수를 산정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⑨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 자녀가 미혼으로 미성년자임을 증명하기 위한 경우 - 본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①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②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③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 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④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⑤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⑥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직계 존·비속)	•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직계 존·비속의 경우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입주자모집공고일로 지정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①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input type="radio"/> ②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③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세대원의 소득입증서류)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참조]
	<input type="radio"/> ④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배우자 및 자녀에 관한 사항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input type="radio"/> ⑤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 제출(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함)
	<input type="radio"/> ⑥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또는 배우자)	• 건본주택 비자
	<input type="radio"/> ⑦입양관계증명서	본인(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input type="radio"/> ⑧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해당자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견본주택에 비자)
생애최초 특별공급	<input type="radio"/> ①주민등록표초본	세대원(직계존속)	• 당첨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당첨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년 이상의 주소 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②혼인관계증명서	자녀	•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본 상 만 18세 이상의 자녀를 '미혼의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input type="radio"/> ③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세대주(청약 신청자) 및 성년자인 세대원 모두 제출하여야 하며, 표시되지 않은 세대원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도 제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모집공고일 이후 변동사항 포함하여 발급)
	<input type="radio"/> ④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
	<input type="radio"/> ⑤소득 증빙서류	본인 및 성년자인 세대원	• 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청약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된 세대주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 입증서류)
	<input type="radio"/> ①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부적격 통보받은 자	<input type="radio"/> ②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원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 변동이력"이 표

기 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서류제출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일반공급 공통서류	<input type="radio"/>	①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input type="radio"/>	②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③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input type="radio"/>	④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⑤출입국 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input type="radio"/>	⑥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초본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으려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⑦출입국사실증명원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생략)	
	<input type="radio"/>	⑧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30세 이전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input type="radio"/>	⑨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바람)	
	<input type="radio"/>	⑩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⑪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한 경우에 한하며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input type="radio"/>	⑫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	
	<input type="radio"/>	⑬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입주자자격에 2년 이상 가입하고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지역의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자[군 복무기간(10년 이상)이 명시]	
부적격 통보받은 자	<input type="radio"/>	①무주택 소명서류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input type="radio"/>	②당첨사실 소명서류	본인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시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여,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이 표기 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당첨자에 대한 명단관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 지정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검색결과를 통보할 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함.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공급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 일을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에서 해당 호에서 정한 기간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1. 수도권 : 1년

2. 수도권외의 지역 : 6개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은 1년)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중 위촉지역 3개월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봄. 다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같은 순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함)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신청한 가점제 점수 (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계약 시 구비서류 안내

구분	서류유형		발급기준	구비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본인 계약 시		○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확인서류 일체 (※ 당첨자 서류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개별 통지)
	○			• 계약금 (무통장 입금영수증 또는 입금확인증)
	○		본인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본인	•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아파트 계약용)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본인발급용
		○	본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사실신고증(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1통) /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또는 외국인등록시실증명서 1통)
제3자 대리계약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본인	•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견본주택 비치)
	○		본인	•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추가 (아파트 계약 위임용) ※ 본인발급용
	○		대리인	• 대리인의 신분증, 인장(또는 대리인 서명)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 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신청자의 별도 요청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변동이력"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및 "주소 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 (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중도금, 잔금	41A, 77C, 80D, 82B	하나은행	415-910027-21904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상기 기재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불가함]
- 계약금 납부 : 분양대금 납부계좌로 입금(입금 예시 : 301호 당첨자가 통길동인 경우 입금자명을 "301통길동" 기재) 후 입금증은 계약 시 제출 바랍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서는 계약금 및 중도금, 잔금에 대한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으며, 선납 시 주택도시보증공사 분양보증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 지정된 계약금, 중도금 및 잔금은 상기 해당 회차별 납부일에 따라 순서대로 납부하여야 하며,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보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지정 계약 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기간 내에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무통장입금자 중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소명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고, 환불 이자는 없습니다. (환불시기 방법 등은 주후 통보)
- 작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 시는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래 "계약체결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유의사항

- 계약체결 기간 내에 견본주택 방문인원이 제한되오니 당첨자는 반드시 공급계약 날짜 및 시간을 예약하셔야 합니다. 계약기간 견본주택 방문을 예약하지 않은 당첨자는 계약 포기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는 견본주택 입장 전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 절차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또한 견본주택 내 체류시간 최소화를 위하여 계약진행 등의 시간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 체결이 불가하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견본주택에 제출하여 부적격당첨 소명기간(7일)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유지됨. 미제출 시 계약이 취소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에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시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 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기관의 전산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로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어 입주금 및 금융비용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산합니다.
- 계약 체결 이후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①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② 청약가점형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③ 가점 점수 및 청약자격 확인을 위하여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하며, 특별공급 및 1순위자(분리세대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는 국토교통부에서 무주택 여부를 검색하여 부적격 당첨자를 판명합니다.

-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각각 동일한 청약 관련 예금으로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합니다.)
-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합니다.
- 주민등록 법령위반 및 청약 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 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입주자정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정당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앞선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주택의 등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앞선 예비입주자의 등호수배정일(당첨일)이 정당 당첨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정당 당첨자 선정은 무효처리 됩니다.
- 계약 이후 인허가청의 요청 및 지시로 인하여 행정구역 및 단지 내 명칭, 동·호수는 향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기반시설 및 협오시설과 공동주택(아파트) 배치, 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주변 도로의 비산분진, 소음문제 등을 포함)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 등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신청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후 주변 단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 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습니다.
- 주변 공동주택 및 시설물로 인하여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협오시설, 냉새유발시설 등의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여 전체적인 단지 및 주변여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 및 주변 개발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인근지역의 개발계획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어,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계약 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합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등에 준합니다.
- 사용승인일 이전 잔금 납부 시 취득세는 사용승인일로부터 60일 이내 자진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대출 안내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 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변화 또는 대출기관의 규제 등에 따라 수익자의 중도금 대출 알선이 제한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러한 제한에도 불구하고 분양대금은 계약자 본인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알선은 사업주체, 시공사, 수익자의 의무사항이 아니며, 계약자에 대한 편의제공에 불과함)

- 본 주택의 중도금 대출시 이자후불제 조건으로 분양가 9억원 이하 세대에 한하여 총 분양가격의 40% 범위 내에서 수익자가 응자 일선을 시행할 예정이며,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금융기관, 집단대출 보증기관의 중도금 대출협약 조건에 의거 주택형별로 계약금 (공급금액의 10%) 완납 이후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계약금 일부 미납 시에는 중도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 적격대출 시 중도금 대출협약기간은 수익자와 대출협약을 체결한 대출 금융기관에서 정한 날짜이며, 중도금 대출금은 입주지정기간 내(입주지정기간 만료) 입주하기 전까지 상환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이자는 사업주체가 지정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의 대출이자는 수익자가 대납하되 계약자는 입주 시 사업주체에서 지정한 기일 내에 대납 이자를 사업주체의 계좌에 일시납부하여야 하며(납부하지 않을 경우 입주가 거부될 수 있으며, 납부지연으로 인한 연체이자 등을 부담하여야 함),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대출이자에 대해서는 계약자 본인이 해당 대출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주택의 입주지정일이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경우에도 중도금 대출 이자는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 전일까지 수익자가 대신 납부하며, 변경된 입주지정기간 최초일부터 발생하는 이자는 계약자가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익자가 대납하던 중도금 대출이자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대출취급(보증) 수수료(집단대출 보증기관의 보증수수료 등),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금융기관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 금융관련 정부 정책, 금융기관, 사업주체, 시공사, 수익자의 사정 등으로 대출관련 제반 사항(대출 취급기관, 조건 등)이 변경되더라도 사업주체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본 주택은 수익자가 알선한 금융기관을 통해 중도금 대출 신청이 가능할 경우에도, 금융관련 정책, 대출기관의 여신 관리규정 등으로 대출조건이 각 세대별, 각 개인별로 상이하거나, 최종적으로 중도금 대출 실행이 불가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중도금 대출 불가 및 대출한도 축소 등으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고 이와 관련된 책임을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경우 대출 가능 여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가 중도금 대출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계약자는 분양계약 체결 후 수익자가 알선한 중도금 대출 협약 금융기관과 중도금 대출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단, 대출 미신청자와 적격대출 가능 계약자라 하더라도 중도금 대출실행이전에 본인의 부작각 사유가 발생하여 대출이 불가능하게 된 계약자는 분양대금을 자기 책임 하에 조달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적격대출 관련 중도금 대출 신청 관련 안내는 당사 의무사항이 아니며, "개인사유로 인한 대출 미신청" 또는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 계약자의 사정에 의한 대출 불가 등으로 발생하는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적격대출은 금융 신용불량 거래자, 타 은행 대출, 대출한도 및 건수 초과, 주택도시보증공사(또는 주택금융공사)의 각종 대출보증서 발급제한 등 계약자 본인의 개인적인 사정 또는 정부의 금융정책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음을 계약자 본인이 인지하고, 중도금 대출이 불가하거나 중도금 대출한도가 부족할 경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가 별도로 분양대금 납부일정을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가 가산됨)하여야 하며, 대출 불가 시 사업주체에게 어떠한 형태의 보상을 일체 요구할 수 없습니다. 분양대금 미납부시 공급계약서 조항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 신용불량 등 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대출 금융기관의 중도금 대출중단 요구로 분양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를 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의 특유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수익자가 알선하지 않은 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자가 직접 대출받은 경우 그에 대한 이자는 계약자가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 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금융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부담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대출조건 등은 대출 금융기관의 조건에 따라야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금융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일부 중도금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적격 대출 시 대출 금융기관과의 중도금 대출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 금융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익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금융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의 중도금대출 금융기관은 정부 금융정책 및 금융기관 사정에 따라 선정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중도금 납입예정일은 조정될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내용을 인지하고 계약을 진행하며 중도금 납입일 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사무소 및 견본주택은 대출 금융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분양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금융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됩니다. 이에 고객의 대출비율 축소 또는 대출 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법인은 중도금대출이 불가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VI

추가 선택품목

본 항목의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계약은 시행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과는 전혀 무관한 사항으로 시공사인 대양종합건설과 별도 계약을 통해 진행됨을 양지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시행수탁자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

1. 발코니 확장 공급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주택형	확장위치	확장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입주지정일
41A	침실2, 거실	4,400,000	440,000	3,960,000
77C	침실1,2,3 거실	2,750,000	275,000	2,475,000
80D	침실1,2,3 거실	2,750,000	275,000	2,475,000
82B	침실1,2,3 거실	2,750,000	275,000	2,475,000

2. 발코니 확장 공사 시 유의사항

-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변경 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변경은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총액 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확장 설치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은 세대별로 택하여 계약하는 별도 계약 품목으로 분양가에는 미포함 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 공급계약 시 별도의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 공사는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견본주택에서 확인 바랍니다.)
- 주택형별로 확장면적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확인하시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부위 표기의 '거실', '침실1' 등의 표현은 카탈로그 기준이며, '계약자 선택사항 및 유의사항'을 계약자가 직접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공사는비는 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미포함 되어 있으며, 추후 분양계약자가 과세관청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자재조달에 따른 계약 및 세대 내부공사 등 공사여건에 의해 발코니 확장 계약 가능 기한 이후에는 계약체결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간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 확장형으로 설계 및 견본주택을 전시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하지 않을 경우 공간이 협소하고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어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확인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 시 확장 부분의 외부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내풍암, 구조검도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문의 방향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본형(비확장) 세대 선택 시 냉방배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TYPE, 배지 및 설치는 확장형 세대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천장 환기구 위치, 에어컨 매립배관 위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인접세대가 발코니를 미확장 시에는 이와 접한 발코니 확장 세대의 확장 발코니 벽면에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되나 결로 발생(임주자께서는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 제기 불가) 및 일부 벽체의 들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의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공사에서 시행하는 발코니 확장은 건축법에 의거 적법하게 설계되었으며, 사용승인 후 개별적으로 확장 시에는 「건축법 시행령」 및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발코니 대피공간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준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관리주체에 반드시 신고 확인 후 설치하여야 합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하는 세대는 관계 법령에 맞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을 개별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나,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적법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의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실내습도 등 생활습관에 따라 발코니 새시 및 유리, 기타 확장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여야 하며, (주기적인 실내 환기는 결로 발생 예방에 큰 도움이 됨), 이로 인한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발코니 확장에 따른 단창호, 단열재 및 마감재의 추가 설치로 발코니 실사용 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확장면 평면에서 비확장으로 남아있는 발코니 새시는 단창으로 설치되며, 해당공간은 결로 방지용 단열재가 설치되나 결로 및 곰팡이 등의 하자발생 시 하자보수 대상에서 제외됨을 알려드립니다.
-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에는 확장된 발코니 일부 벽체의 단열 및 결로 방지를 위하여 확장부위 일부 벽체 및 천장이 분양안내서 그림보다 다소 두꺼워질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세대는 인접세대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부위에 단차가 생길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단열재 추가 설치 등으로 인한 천장 및 벽체 들출, 우물천장 사이즈 감소, 조명의 위치와 상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의 상부세대가 비확장일 경우 상부세대의 배관 일부가 확장세대 상부에 노출되어 이로 인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업주체 또는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벽체 칸막이의 개별 시공(관계 법령에 의거 입주자 등의 동의 필요)을 할 경우 계약자는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플러스 옵션

1. 옵션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 제공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제품명	금액
41A	LG 9KG(빌트인)	LG, F9WKBY 세탁전용 9KG	473,000

2.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발코니 확장 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설치 위치 세부사항		금액
41A	전체(실내기 3대)	확장형, 3실-거실,침실1,2 실외기(AJ025MXHNBC1)	4,950,000
77C	전체(실내기 4대)	확장형, 5실-거실,침실1,2,3,4 실외기(AJ025MXHNBC1)	6,600,000
80D	전체(실내기 4대)	확장형, 5실-거실,침실1,2,3,가족실 실외기(AJ025MXHNBC1)	6,600,000
82B	전체(실내기 4대)	확장형, 4실-거실,침실1,2,3 실외기(AJ025MXHNBC1)	6,600,000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공사비는 본 아파트(공동주택)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옵션 미선택시 거실 1개소(스탠드용) 에어컨스리브 및 해당 콘센트가 시공됨.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시에는 기본제공인 스탠드용 에어컨스리브 설치공사를 제외함.

※ 시스템에어컨의 제조사 및 모델은 시공사가 선택하며, 계약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이며, 무선리모컨으로 제어함(월패드 연동되지 않음) ※ 설치 제품은 설치 시점의 동종, 동가의 최신제품으로 설치됩니다.

3. 현관 중문(발코니 확장시에만 선택 가능)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품목	주택형	위치	구분	금액
현관 및 드레스룸 중문	41A	현관	3연동누드도어, 1350x2400	858,000
	77C	현관	3연동누드도어, 1300x2400	836,000
	80D	현관	원슬라이딩도어, 1000x2400	583,000
	82B	현관	3연동누드도어, 1250x2400	814,000

• 현관 중문 미선택시 중문들은 시공되지 않으며,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서 계약시 형태, 제품사양 등에 교체 및 변경을 요청하실 수 없습니다.

• 현관 중문은 기밀, 차음, 단열 등의 성능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공간 분리 및 시야 차단의 목적에 한하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41A형에 거실+주방+복도+각 침실바닥은 강마루가 시공되며, 77C·80D·82B형은 거실+복도+각 침실바닥은 강마루/주방바닥은 폴리싱타일이 시공됩니다.

• 상기 개별옵션 중 바닥재 미선택 시 일반 강마루가 설치되오니 계약 전 반드시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설치 위치 및 품목은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및 품목을 지정 선택할 수 없습니다.

• 플러스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플러스옵션 낭부비율

구분	계약금	잔금
납입금액	10%	90%
납입시기	공급계약시	입주지정일

■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안내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확장 및 플러스옵션 납부계좌	하나은행	406-910018-59104	대양종합건설(주)

※ 상기 계좌는 아파트 분양대금 계좌와 별도입니다. (입금 시 유의 바람)

- 상기 관리계좌로 납부하지 않은 발코니 확장비 및 플러스 옵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 확장비 및 플러스옵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아파트 분양대금을 전액 납부하였더라도 발코니 확장 및 플러스옵션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잔금까지 완납세대에 한하여 입주가 가능합니다.
- 착오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책임지지 않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1. 마이너스 옵션 품목 및 주택형별 금액

■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품 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본제공 품목
바닥재	바닥재(강마루, 현관 바닥타일, 현관 디딤판), 걸레받이, 발코니바닥타일, 재료분리대 등	바닥난방 + 시멘트 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세탁실 바닥방수, 발코니 우수선홈통
벽, 천장	벽지 및 천장지(초배지 포함), 벽 및 천장 도장, 거실 아트월(타일, 시트 등),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정 인테리어 마감	벽체 : 단열+석고보드/미장/콘크리트 면처리 또는 시멘트몰탈 천장 : 천장틀+석고보드
조명기구	부착형·거치형 조명등 기구	배관 · 배선류(콘센트, 스위치)
욕실	천장재(천장을 포함), 타일(바닥, 벽),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등), 샤워부스, 수전류, 욕실 환기구, 욕실장, 액세서리, 콘센트, 스위치, 코킹, 재료분리대, 젠다이, 비데	조적, 방수, 미장, 설비배관, 전기배관/배선
주방가구	주방가구 및 기구(상판 및 악세서리 포함), 각종 선반, 벽타일, 설비 수전류, 주방가전 일체 (렌지후드, 쿡탑등)	설비배관
가구 및 기타사항	신발장, 드레스룸장, 화장대, 침실불박이장, 수납장, 각종선반	
창호	목재문(문틀, 문짝, 상부덧판, 문선), ABS도어 창호 철물일체(도어록, 경첩 등), 디지털도어록	목재 가틀(사중 및 하부씰 제외), 발코니 내부 PVC창호(시트지 제외), 세대 현관방화문 및 철재 일반 도어록, 소방 관련 방화문

※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세대별 일괄로 선택해야 하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금액 : 원, 부가기지세포함)

주택형(1세대당)	41A	77C, 80D, 82B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	12,840,000	16,700,000

2. 계약의 변경 및 해제

- 마이너스 옵션의 선택은 아파트 공급계약의 부수되는 계약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시에만 선택가능하며, 신청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계약의 변경 및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할 경우 계약자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분양대금 납입 비율은 일반분양 계약자와 동일합니다.

④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신청이 불가합니다.

3. 권리의무승계

마이너스 옵션은 아파트공급계약과 별도로 양도·양수할 수 없으며, 아파트 공급계약 양도·양수시 포괄적으로 승계됩니다.

4. 하자보수

계약자가 개별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시공한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제5조 【모 계약의 준용】

마이너스 옵션 계약은 아파트 공급계약인 "母계약"에 부속하는 계약으로 "母계약"과 분리하여 별도의 효력을 가지지 않으며, 마이너스 옵션 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母계약"을 준용 하되, "母계약"에도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따릅니다.

6. 유의사항

- ①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금액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의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또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계약자는 실내공사 계약 시 하자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도록 명기하고 보험증권을 스스로 장구하여야 합니다.
- ②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세대 내 서비스 제공 품목은 시공되지 아니합니다.
- ③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시설물을 훼손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훼손 시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④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⑤ 마이너스 옵션 부분공사 시 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 등을 훼손한 경우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⑥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주택형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⑦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당사와 무관한 계약자의 개별적인 발코니확장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관계법령 위반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⑧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⑨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청호 및 바닥에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고, 기둥 및 벽체에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견출, 도장)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⑩ 마이너스옵션 부분의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납부 이후 가능하므로 계약자는 이를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워야하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3조 규정에 의거 최초 입주가능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규정을 준수하여 기본 선택 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⑪ 마이너스 옵션 선택 개별공사시 기 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됨으로 인해 초기 설정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 (입주지정 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고,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 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측과 계약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⑫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가 개별 빌코니확장 및 개별 마감재를 시공함으로써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초래하여 탑입주자에게 불편을 끼치거나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는 무관하며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⑬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입주 후 상당 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 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유의 하시기 바랍니다.

-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4조 1항에 의거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품목으로서 계약자는 추가로 품목을 선택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여부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 시 입주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입주자와 주택공급계약 체결 시 추가선택품목의 구입의사가 있는 입주자와 추가선택품목 공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모집공고 외 추가 선택품목 설치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및 시행지침]에 따릅니다.

- 기 유상옵션은 계약 시점 이후 시공을 위해 자재를 발주해야 하므로 중도금 납부 이후에는 유상옵션 공급주체 및 시공사의 동의 없이 계약 해제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 (추가 선택품목 계약 체결 최종 일정은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시공 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별도로 유상옵션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상기 유상옵션 품목 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세제공과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카다로그 상 표기되는 각 실의 명칭은 카다로그 기준이나, 설계변경 등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 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의 설치 위치는 지정되어 있으며,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 유상옵션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견본주택에 설치된 세대에 일부 품목이 전시되오니 청약 및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상옵션 품목은 본 공동주택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품질관리하는 품목으로써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타사 및 기타, 시중품과 비교 검토한 후에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VII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1. 입주예정일 : 2022년 12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월을 통보,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 예정)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진급은 실입주일 이전에 납부 후 입주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확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정부 정책이나 관계 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지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9조에 의거 공동주택 실내공기질 측정 결과를 입주 약 3일 전부터 약 60일간 입주민의 확인이 용이한 곳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 사업주체는 수분양자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채권회수를 위하여 입주관리 (분양대금, 보증부대출금 등 채무 미완제시 입주 및 소유권등기의 거부, 채무변제의 독촉, 가압류 등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적절한 조치를 위한 통지 등을 함)를 이행하며, 이와 관련하여 수분양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으며, 또한 민·형사상의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습니다.

2. 입주자 사전 방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도배공사·가구공사·타일공사·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가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 개시일 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합니다.

3. 유의사항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황후 입주 후에도 주변 건축물 및 도로공사가 진행될 수 있어 먼지, 소음 발생 및 통행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 사용검사 때와 달리 입주 후 교통량 증가 등 주변여건 변화로 소음이 심화될 경우에는 행정청에 이의제기 및 보상요구를 할 수 없으므로 소음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속지하시고,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주차장 출입 가능한 제한 높이 : 지하주차장 유효높이는 지하 1.2층 2.3m 이하 (택배차량은 지하1층 까지만 진입 가능)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2, 동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적용됩니다.

VIII

기타 유의사항

공통	일반사항	각종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세대별 단지 및 지구의 불리한 요소는 표현되지 않을 수 있으나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이 어려운 공용부분 시설물 (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 등)은 준공도서에 따릅니다. 각종 홍보물상의 이미지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건축물의 외관 및 색채계획, 조경 식재 및 시설물 등의 기타시설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를 제외한 기타 사항 (개발계획, 주변건물 현황, 산, 조명, 외부식재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견본주택 및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p>각종 흥보물의 평면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것으로 세부계획(기구 및 각종 내부 마감재의 색상, 패턴 등)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p> <p>각종 흥보물의 사진, 평면도, 이미지 등에는 전시품목 및 선택옵션이 적용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견본주택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각종 흥보물에 명기된 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p> <p>각종 흥보물에 표기된 위치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개발 예정사항까지 개략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 또는 마감사양, 부대·편의시설, 조경 등의 추가설치 및 교체를 요구할 수 없으므로 단지와 충분히 비교 검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견본주택, 카탈로그 등에 기재된 마감재 수준 이상의 변경요구는 불가하므로 마감재 수준을 자세히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분양계약서와 기타 흥보물과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분양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p> <p>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 및 관계법령에 의거 적용됩니다.</p>	
인허가	<p>각종 흥보물은 2021년 1월 18일 건축허가 도면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최종 시공은 준공(실시설계) 도면에 의거하여 시공됩니다.</p> <p>흥보물에 표시된 주변 개발계획 및 각종 시설 조성계획은 각 해당 시행주체가 계획 또는 예정 중인 사항을 표현한 것으로 해당 시행주체 및 국가시책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최초 건축허가일이 2021년 1월 18일로 소방내진설계가 적용됩니다.</p> <p>현장여건반영, 구조·성능·품질개선 등을 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p> <p>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에 의하여 시공관리 예정입니다.</p> <p>아파트 저층부는 석재와 뼈칠, 페인트로 마감되며, 동형태에 따라 석재와 뼈칠, 페인트의 적용비율은 상이할 수 있고, 인·허가 및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도시계획시설(도로)에 따른 가감차로 관련하여 부지 내 횡단하는 보행통로는 보행이 지장이 없는 구조로 설치하고, 일반인이 항상 이용가능하도록 개방하고 유지되어야 합니다.</p>	
사업지 및 도로 단지 주변 현황	<p>단지 동측에는 8m 보행자도로, 남측에는 10m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나 현장을 확인하신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p> <p>사업부지 면적, 대지지분 등은 향후 기부채납, 지적정정측량 결과 또는 공부정리결과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공동주택과 균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각 용도별 연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으며, 공동주택 각 형별 대지지분은 전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산정하였습니다.</p> <p>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경계에는 투시형 헌스(방음벽 포함) 또는 조경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행정관청의 지침 등에 따라 설치여부, 구간, 재질, 규격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부지 내 움벽 지지를 위해 지하 매설물이 설치될 경우 영구 점용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p> <p>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향후 공사 중 먼지, 소음, 진동으로 인한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본 사업의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합니다.</p> <p>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배치도 단지 CG 영상 및 각종 흥보 영상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바랍니다.</p> <p>단지 외부의 주변 도로 등은 현재 상황 또는 설치 계획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p> <p>전력공급을 위한 배전선로가 사업부지 인근에 설치될 예정으로 기반시설 완료 후에는 연장하여 전력공급이 가능하나, 수급지점이 공동주택 출입구 쪽에 위치하도록 예정되어 있습니다.</p> <p>공동주택 외부에 들출되는 급·배기시설, 실외기 등의 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며, 해당 시설의 위치 등을 견본주택 및 홈페이지 등에서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학교	본 아파트의 입주에 따른 유입학생은 신정초등학교에서 수용할 예정이나 교육부의 정책,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및 학생배치여건 변화 등에 따라 학생 배정계획은 해당 교육청에서 아파트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결정하는 사항이므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단지	동 현황	<p>본 건물의 저층 세대는 차량 통행 및 보행자로 인한 빛의 산란, 소음, 생활활동 침해, 쓰레기 보관소의 악취, 분진 등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p> <p>본 건물 후면에는 발전기용 급배기 D.A가 설치되어, 발전기 가동 시 소음 및 진동, 연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일부 동호는 주변 건물 및 구조물, 단지 내 같은 동 다른 라인에 의해 조망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여건에 따라 위치, 크기 및 구조형식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일부 동호에는 이삿짐용 사다리차 접근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본 건물 하부는 균린생활시설이 설치되어 일부 저층세대는 소음 피해 및 생활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본 건물 하부의 균린생활시설 영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가 주거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p>
	단지계획 (설계, 디자인, 마감)	<p>배치도의 대지경계선, 구역경계선, 범면 현황은 최종 측량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내부 도로 및 조경선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배치도 상의 각 시설의 명칭 및 내용은 인·허가 과정, 법규 변경, 공사여건 및 상품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계획은 본 시공 시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본 시공 시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용적률, 주차대수는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균린생활시설 구성 및 건축 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는 단지배치 및 층별, 향,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악취발생·생활 침해 등 생활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주거동의 동, 호수, 층별 위치에 따라 난간벽의 높이, 난간대의 형태 및 재질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동 출입구의 장애인용 경사로, 단지 내부도로, 단지 내 도로 (차도, 비상차도, 산책로, 지하주차장 경사로 등), 조경시설 (수공간 등), 자전거보관소, 지하주차장 주차램프, 단지주출입구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 공해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구간별 사업부지 단자구간에 조경석 쌓기 또는 옹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추후 인허가조건, 미관, 구조물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설비 통기배관, 위성안테나, 공청 안테나, 이동통신 중계기, 파뢰침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조명 및 빛의 산란에 의해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주요 구조체는 정밀구조계산에 따라 최적화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내벽벽은 비내력벽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출입구 및 부출입구를 제외한 보행자 전용 통로는 개방형으로 시공되므로 외부 인원의 통행제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p> <p>단지와 외부 도로 사이의 경계담장을 행정관청의 지침 또는 주변 단지 인원에 따라 설치여부, 설치구간, 재질 및 형태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배지도 상에 표현된 D.A의 위치 및 크기는 변동될 수 있으며, 일부 D.A는 건물에 매립되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스프링클러 배관 관경 및 기준 개수 등 소화 시설물의 기준은 수리계산에 의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p> <p>조경 공간의 형태, 도로의 선형, 포장 계획, 세부 식재 위치 등은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현장여건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조경공간에 지하시설물 환기 및 재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 발전기 연도 등)이 노출되어 있고, 단지 내 통행로 등에 인접할 경우 생활의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건본주택 내 시공된 사향과 달리 걸로방지를 위해 살외기실 측벽벽체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이에 따라 발코니 면적이 축소될 수 있으나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본 건물 전면 또는 후면에 외부용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인근 세대는 소음 등에 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나, 계약 전 단지모형 등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주동 및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 상부에 옥상조경이 설치될 수 있으며, 조경계획은 옥상의 환경을 고려해 실시설계 및 시공 사 확정됩니다.</p>
외관계획	<p>외창부 벽에 입면디자인을 위한 돌출부가 있을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건물의 외관디자인 (색채, 입면패턴, 마감재, 장식물, 옥상구조물 등), 조경디자인, BI 위치 및 내용, 옹벽 및 난간의 형태 등은 설계 및 인·허가 과정 및 발주처 협의에 따라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세대의 외벽 및 지붕 등에 장식물 및 구조물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아파트 저층부 마감재의 종류와 적용 비율은 상이할 수 있으며, 인·허가 및 현장 여건에 의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p>외벽에 유리 마감재 (커튼월류) 및 물딩이 설치되며, 면적 및 적용위치는 세대별로 상이합니다. 또한, 세대위치에 따라 일부 세대은 빛의 반사로 인한 눈부심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외부조명은 빛공해 심의결과에 따라 설치 및 작동에 제약이 있거나, 위치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p>
공용시설	<p>주민공동시설, 근린생활시설 등 부대시설에 인접한 세대는 해당시설 이용 및 부속시설물 (에어컨실외기, 배기팬, 설비시설, 쓰레기수거시설, 옥외엘리베이터 등)로 인해 일조권·조망권·소음진동·사생활침해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계획된 산책로 설치로 인해 아파트 세대의 실내가 투시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p> <p>본 아파트 단지 내에 쓰레기 야직장 및 분리수거장, 재활용보관소 등이 설치되어 이로 인한 일부 세대는 냄새 및 소음,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p> <p>지하주차장 구조검토결과에 따라 기둥, 보, 벽체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주민공동시설 내 기둥이 추가되거나 공간계획과 인테리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 및 부속시설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해 주변 인접 동에 소음 및 진동이 전달될 수 있으며, 설치 시 현장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p> <p>단지 내 시설물 (에어컨 실외기, 쓰레기 분리수거함, DA 등)의 설치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입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입주자대표회의 구성 후 새로운 주택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주민공동시설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비용은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에 의거 관리비에 포함하여 개별세대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p>
공용설비 및 시스템	<p>부력방지를 위한 영구배수 공법이 적용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용 전기세 및 하수도 요금이 발생되고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p> <p>지하층 및 지상 1층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에어컨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p> <p>도시가스 공급을 위하여 단지 내 정압기가 설치될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제반사항은 도시가스 공급업체와의 최종 협의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당 현장은 도시가스 원격계량기가 없으며, 근린생활시설은 가스계량기 설치 시부터 가스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지하주차장 및 근린생활시설에는 배관 등파 방지를 위해 열선이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합니다.</p> <p>공용부위 조명 및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p> <p>지하시설물의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 (외부계단, Top Light, 제연헬름, DA)과 인접한 저층세대는 소음 및 조망 등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p> <p>엘리베이터와 인접한 세대는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펌프실, 언료전지기계실 등 기계실에 인접한 곳에서는 장비로 인한 소음, 진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무인택배시스템 사용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되며, 무인택배함은 1층 1개소에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는 단지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각 층의 1호와 12호, 특히 3층~5층의 저층부 주거세대는 1층의 DA(환기구)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주차장	<p>지하주차장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배선, 장비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p> <p>주차장은 아파트 90대, 근린생활시설 29대, 총 119대 (경차 및 장애인주차, 전기차충전 주차구획 포함)로 계획되어 있습니다.</p> <p>구조형식 상 지하주차장의 주거동 직하부 주차구획구간은 기둥 및 벽으로 인하여 차량도어 개폐 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화재안전기준에 의거 옥내소화전의 배치상 지하주차장의 일부 주차구획은 차량도어 개폐시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단지특성 상 지하주차장은 지하2층까지 계획되어 있으며, 구획별로 지하주차장 레벨 및 주거동 연결통로의 길이 및 형태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구조는 공사여건에 따라 PC 또는 데크로 변경될 수 있으며, 퍼트 (PT)공간의 구획, 높이 및 면적, 비내력벽의 두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전기차 충전시스템은 총1개소 설치되며, 주차장의 위치 및 구조에 따라 배치위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지하주차장 진입 및 주행 유효높이는 2.3m로 소형 택배차의 진입은 가능하나(택배차량은 지하 1층까지만 진입 가능), 사다리차, 대형차, 대형택배차 등의 진입은 불가합니다.</p> <p>아파트와 근린생활시설 주차출입구는 별도로 구분되어 있으며, 아파트 지하주차장 진·출입구는 1개소입니다.</p>

	근린생활시설	<p>근린생활시설의 대지지분은 아파트와 별개로 산정되어 있으며, 아파트 부지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외관과 내부 건축계획의 변경은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변경 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의 분양시점에 따라 MD계획이 미확정될 수 있으며, 추후 MD계획 확정에 따른 면적 변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용 쓰레기분리수거장은 지하 1층에 설치되며, 이로 인한 냄새 및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고 쓰레기 수거차량의 상시접근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p> <p>근린생활시설을 이용하는 차량은 각 근린생활시설용 지하주차장을 이용해야 합니다.</p> <p>근린생활시설 영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연기 및 냄새가 주거부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p>
	평면	<p>본 사업은 같은 주택형이라도 면적이 조금씩 상이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 대칭이 될 수 있습니다.</p> <p>주택형별 전용면적, 공급면적 및 계약면적의 소수점 이하 숫자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본 아파트 세대의 천장 높이는 2.4m로 시공됩니다.</p> <p>입주 시 세대 내에 침실별 가구 (장롱, 불박이장)를 개별적으로 추가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기 바랍니다.</p> <p>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p> <p>단위세대 현관 및 현관창고는 바닥 난방이 시공되지 않습니다.</p> <p>3층 테라스에 접한 세대는 각 세대가 전용하며, 그 외 세대가 공유할 수 없습니다.</p>
	발코니	<p>발코니는 계획용도에 따라, 수전 드레인 또는 선출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위치와 개수가 변경될 수 있고,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p> <p>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 시공 및 단열재가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차에 의하여 결露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보관된 물품은 훼손될 수 있습니다.</p> <p>또한, 발코니 외부 측벽 및 천장에 최소 결로방지를 위한 주가 단열재 및 마감재가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코니 내부폭 및 크기가 축소될 수 있습니다.</p> <p>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p>환기시스템 설치 또는 시스템에어컨 선택에 따라 실외기실 또는 다용도실 천장에 넥트, 배관 등이 노출 시공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미관이 저해되거나 천장고가 낮아질 수 있고, 내부 미감 (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 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화재 등 유사시에는 실외기실 내 하향식 피난구를 통해 대피하거나, 계단실을 이용하여 대피하여야 합니다.</p> <p>발코니에는 결로에 의한 하자 등을 방지하기 위해 콘센트가 설치되지 않습니다.</p> <p>하향식 피난구 설치세대 (1층 및 필로터 상부세대 제외)는 비상 시 하향식 피난구 사용을 위해 항상 실외기실 출입문은 닫힌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범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p> <p>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의 발코니가 협소하여 사용에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p> <p>기본형 (비확장) 세대의 경우 외부 창호가 설치되며, 상층 및 하층 세대 단열 및 배수설계를 위해 발코니의 천장고 및 창호 높이가 축소 시공되고, 발코니의 바닥레벨이 거실 및 침실에 비해 높게 시공되어 사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 창호 하부에 턱이 설치되어 출입에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p>
단위세대	창호	<p>저층 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호는 다소 축소 및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확장 시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충수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 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 방향, 날개 벽체 및 분할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발코니 외부창 및 내부 창호의 사양(제조사, 브랜드, 디자인, 개구부 및 프레임 사이즈, 창틀, 하드웨어, 유리두께 등)은 공급업체 사정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나, 동등급 이상으로 설치됩니다.</p> <p>현장 어건 및 입주자 사용성 개선을 위해 목문의 사양 (문틀의 폭, 재질, 개폐방향,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타입별로 창호높이 및 천장의 형태, 높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창호에 설치되는 방충망의 형태는 본 공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거실 및 안방의 외부창호는 유리난간 단창 (별도의 철재난간이 없는 접합유리난간 일체형 타입)으로 이삿짐 차량을 이용한 운반 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한 보양조치에 대한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p> <p>펜트하우스 및 테라스타입의 단위세대 일부 구간에는 조망권 및 미관개선을 위해 알루미늄 커튼월 단창이 적용될 예정이며, 이 경우 개폐창은 미닫이방식이 아닌 여닫이방식으로 적용됩니다.</p>
	옥외공간 (테라스)	<p>단위세대의 옥외공간은 설계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공용공간으로 다른 세대의 진입은 불가능하나, 해당 세대의 전용공간이 아니므로 공용설비 및 시설을 유지를 위한 진입요구 시 개방하여야 하며, 등기를 포함한 재산권 행사는 불가합니다. (침합건물법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p> <p>옥외공간 바닥은 콘크리트 마감이며, 바닥 레벨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옥외공간에는 우수 또는 배수 드레인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으며, 수량 및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옥외공간 진입을 위해 단위세대 발코니 외부창호에는 난간이 설치되지 않고, 옥외공간 외곽에 난간이 설치될 수 있으며 재질 및 색상, 높이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사업주체 및 시공사가 준공 시 입주자에게 인도하는 옥외공간 건축 기본마감 (방수, 단열, 무근콘크리트)외에 입주자의 추가적인 시공(데크, 타일마감 등)중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입주자에게 책임이 있으며, 입주자는 옥외공간 상부의 허용허중, 방수, 배수에 대한 기본설계 조건에 대해 전문가의 확인을 받은 후 시공해야 하며 공사 시 인접 세대 및 하부 세대에 통보 후 동의를 구하고 시공하여야 합니다.</p> <p>옥외공간에는 조경용 수전 및 배수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해당 부위에 물막힘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p>
	가구 및 마감재	<p>불박이기구 (신발장, 불박이장, 주방가구, 옥실장 등)로 가려지는 벽, 바닥, 천장의 마감재는 설치되지 않으며, 가구 하드웨어 (힌지, 레일, 조명 등)는 본공사 시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마감자재 (석재류, 타일류, 상판류 등)는 지재 특성 상 색상, 무늬 및 패턴 등이 균질하지 않을 수 있으며, 본 공사시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주택형별 옵션 선택에 따라 가구 및 수납계획 (디자인, 크기, 도어갯수 등), 우물천장 크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p>옥실 출입문짝 (부부, 가족)은 본 공사 시 PVC 계통 (ABS) 도어로 시공됩니다.</p>

	<p>인접 세대 간 사생활 침해 최소화를 위해 일부 세대 아트월방향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파드, 설비배관 등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욕실에 설치되는 위생도기, 수전류 및 각종 액세서리류 (수건걸이, 휴지걸이 등)의 설치 시 현장 여건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냉장고장 형태는 옵션사항이며 이에 따라 냉장고장이 상이하게 설치되오니, 계약 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미선택 시 냉장고 (입주자 직접 설치 가전)가 제품사양에 따라 일부 돌출될 수 있습니다.</p> <p>세대별 공간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 (규격)의 가전제품 (냉장고, 김치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나 유의바랍니다.</p> <p>욕실거울, 수전류, 각종 액세서리류 (수건걸이, 휴지걸이 등) 및 사워부스, 철재류는 녹발생 방지를 위하여 알칼리나 산성세제가 아닌 중성세제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p> <p>현관중문은 주택형별 사양 (개폐타입, 사이즈, 색상 등)이 다르며, 본공사 시 형태, 재질, 색상, 하드웨어의 사양 등이 동급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유상옵션 품목인 현관중문 설치유무에 따라 신발장의 형태나 규격, 설치위치, 도어개수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세대 내 적용되는 유리류는 자재특성 상 조명 및 각도 등에 따라 색상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p> <p>스타일옵션 선택에 따라 마감재, 벽체 및 가구계획, 일부 공간의 조명 등이 달라지므로 실제 적용된 마감재를 견본주택에서 반드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p>
전기기계설비	<p>환기시스템 및 욕실배기, 주방배기是为了 위하여 외부에 환기캡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욕실에는 바닥 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팬이 설치됩니다.</p> <p>세대 내부의 욕실 단자는 바닥 구배 시공으로 인해 준공도면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 출입 시 욕실문에 의한 신발 걸림이 있을 수 있습니다.</p> <p>환기디퓨저 위치는 공사용 설계도면기준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에어컨은 실외기 공간을 감안하여 에어컨 성능에 지장이 없도록 입주자가 설치하여야 합니다.</p> <p>입주자의 필요에 따라 에어컨 추가가 설치 시 별도의 실외기 고정대 설치를 하여야 원활한 사용이 가능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자동재어시스템 및 온도, 환기조절기 등은 내부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된 제품과 상이한 제품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p> <p>스프링클러 및 소방감지기는 견본주택 소화시설물로서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사용됩니다. (본 공사 시 상기사항 적용에 따른 일부 마감 사양, 우물천장, 커튼박스, PL창호, 주방기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1층 세대 하부에 각동 제연을 위한 급기구가 설치되며, 설치 위치는 동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p> <p>욕실, 드레스룸 및 펜트리의 난방제어를 위한 온도조절기는 별도로 설치되지 않으며, 난방배관 설계에 따라 인근 온도조절기(거실용 또는 침실용)에 의해 통합제어 될 수 있습니다.</p>
견본주택	<p>견본주택 내에는 기본제공 마감재 이외의 유상옵션 품목 또는 디스플레이를 위한 상품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견본주택을 관람하시고, 분양가에 포함된 품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 이상의 티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견본주택의 배선기구, 조명기구, 월파드, 통신 단자함, 세대 분전반은 상황에 따라 타입 및 위치, 수량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동일한 타입도 옵션 선택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p> <p>견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견본주택용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p> <p>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견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p> <p>단지 CG 영상, 단위세대 VR 촬영 영상은 보여지는 색상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단지, 단위세대 내에 설치되는 조명의 색온도는 일반 조명의 색온도와 다를 수 있음)</p> <p>단지 CG 영상, 단위세대 VR 촬영 영상, CG의 외관, 조경, 주변계획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돋기 위해 참고용으로 작성한 것으로 실제 다를 수 있습니다.</p> <p>단지 CG 영상, 단위세대 VR 촬영 영상에 표현되는 아이템은 화각에 의한 왜곡 등 기술적인 문제로 인하여, 실제와 달라 보일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 기타 유의사항

- 본 단지의 판매시점에 따라 항후 분양조건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계약자는 계약 시 현재 조건을 확인하여 계약하였으므로 계약조건 보장 및 변경 등의 요구를 할 수 없으니 이 점 양해 바랍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을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최종 주택건설사업 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수락 하에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 또한 사업시행변경 등 관련법규에 대한 제반서류는 요청 당사자가 징구하여 사업주체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 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중도금 대출취급기관, 시공사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 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시공사와 무관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는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입주자모집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당사 견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3항 및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수준(적용여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구분	의무사항	적용 여부	사항,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필요시)
기계부문 설계기준 (제7조 제3항 제2호)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가록) (냉난방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1호에 의한 설계용 외기조건 준수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8조 제2호에 의한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준수
	고효율 가정용보일러(다목)	미적용	지역난방
	고효율 전동기(라목)	적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고효율에너지 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 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급수펌프(마목)	일부적용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절수형설비 설치(바목)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 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1조의2, 별표2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실별 온도조절장치(사목)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전기부문 설계기준 (제7조제3항제3호)	수변전설비 설치(가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1호에 의한 수변전설비를 설치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나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2호에 의한 간선 및 동력설비를 설치
	조명설치(다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3호에 의한 조명설비를 설치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 설치(라목)	적용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제10조 제4호에 의한 대기전력자동차단장치를 설치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마목)	미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 내진성능 및 능력 공개

- 본 아파트는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에 따른 내진성능 확보 여부와 내진 능력 공개에 의거 내진능력을 아래와 같이 공개 합니다.

구분	내용
내진능력	VII-0.204g

※ 내진능력 : 건축물이 지진 발생 시에 견딜 수 있는 능력으로,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60조의 2에 따라 산정한 수정 매르칼리 진도등급(MMI등급. I ~VII)으로 표기

■ 마감재 목록표 (A-TYPE)

구 분	사양	사양	모델명	규격
시트지	문틀,문선,걸레받이 등	PVC 시트	W198	-
창호	AL 커튼월	AL	제작품	-
	PL 슬라이딩도어	플라스틱	제작품	-
	현관 방화문	칼라강판도어	제작품	-
	화장실 목창호	ABS도어+시트	W198	-
몰딩	천정	PVC	제작품	-
	우물천정	PVC	제작품	-
도배지	거실,주방,현관	실크벽지	77263-1	-
	방	실크벽지	77264-3	-
	천정	실크벽지	97157-1	-
바닥재 [타일,석재,재료분리대,강마루]	현관 바닥	폴리싱 타일	KB4802	400*800
	현관 디님판/걸레받이	인조강화대리석	LU407 Devrent	-
	거실,방,주방	강마루	퓨어 아이보리 JP002	98*815*7
	주방,식당 벽	도기질 타일	AJ75302	75*300

거실	화장실	이마지월	포세린 타일	HS 4801	400*800
		화장실 1,2 바닥	자기질 타일	AJF 3051	300*300
		화장실 1, 벽	도기질 타일	KB 2571	300*600
		화장실 2, 벽	도기질 타일	AJ 36D-004	300*600
		벽 재료분리대	AL	-	-
		젠파이	인조강화대리석	LU407 Devrent	-
		재료분리대(도어 SILL)	인조강화대리석	Coral, F-330	-
	발코니, 대피공간	바닥	자기질 타일	AJF 211	200*200
		창대석	인조강화대리석	LU407 Devrent	-
수전	화장실	세면수전(거실화장실)	-	FA 1611_원출	-
		세면수전(부부욕실)	-	FA 2611_원출	-
		샤워 수전	-	FB0200NRC	-
	발코니수전	-	-	FS130T+PF038	-
		청소수전	-	FJ 7065	-
	수전	세탁수전	-	FS 128T(온,냉)	-
		주방수전	-	FD 1742	-
위생도기	양변기	-	-	DC 212N	-
	세면기	-	-	DL 512	-
욕실 액세서리	휴지걸이	-	-	FA 6020TR	-
	수건걸이	-	-	FH1051-0GAK460AN	-
	슬라이드바	-	-	FH6445-0GAK291AF	-
	코너선반	-	-	FH1046-8HAK400AW	-
	청소솔	-	-	FH1062-0GAK490W	-
	비데	-	-	DB 4201	-
	욕실장	PS	몸체-전사 (은장무광색상)	-	-
가전기기	욕실천정재	ABS평형	제작품	-	-
	전기쿡탑	인덕션 3구	IHR-B310E	W590*D520	
	후드	후드(침니형)	블랙글라스		
전등류	현관센서등	W280 * D280 * H65	LED 15W	-	-
	방등	W600 * D600	LED 50W	-	-
	복도등	W110Φ * H45	LED 5W	-	-
	화장실 매입등	W605 * D185 * H70	LED 25W	-	-
	샤워부스 등	Φ175 * H45	LED 15W	-	-
	주방등	W605 * D185 * H70	LED 25W	-	-
	팬던트등	W420 * D160	LED 8W*2	-	-
	거실등	W700 * D400	LED 50W*2	-	-
	파우더룸 등	W280 * D280 * H65	LED 15W	-	-

	대피공간 등	Φ230 * H95	LED 10W	-
	발코니 벽등	W125 * D150 * H200	LED 10W	-
배선기구	일괄소등	-	노벨	-
	스위치/콘센트	-		-
총오토메이션	월패드	10인치	CSH-3 100	-
	현관카메라	W97.6 * D15 * H148.8	CDC-200	-

■ 마감재 목록표 (B-TYPE)

구 분	사양	사양	모델명	규격
시트지	문틀,문선,걸레받이 등	PVC 시트	W198	-
창호	AL 커튼월	AL	제작품	-
	PL 슬라이딩도어	플라스틱	제작품	-
	현관 방화문	칼라강판도어	제작품	-
	화장실 목창호	ABS도어+시트	W198	-
몰딩	천정	PVC	제작품	-
	우물천정	PVC	제작품	-
도배지	거실,주방,현관	실크벽지	지정벽지(A-TYPE 동등이상)	-
	방	실크벽지	지정벽지(A-TYPE 동등이상)	-
	천정	실크벽지	지정벽지(A-TYPE 동등이상)	-
바닥재 [타일, 석재, 재료분리대, 강마루]	현관 바닥	폴리싱 타일	지정타일(A-TYPE 동등이상)	400*800
	현관 디딤판/걸레받이	인조강화대리석	지정인조대리석(A-TYPE 동등이상)	-
	거실, 복도, 주방	폴리싱 타일	지정타일(A-TYPE 동등이상)	98*815*7
	침실	강마루	지정마루(A-TYPE 동등이상)	75*300
	주방, 식당	도기질 타일	지정타일(A-TYPE 동등이상)	400*800
	거실	이미지월	포세린 타일	300*300
	화장실	화장실 1,2 바닥	자기질 타일	300*600
		화장실 1, 벽	도기질 타일	300*600
		화장실 2, 벽	도기질 타일	-
		벽 재료분리대	AL	-
		젠다이	인조강화대리석	-
	발코니, 대피공간	재료분리대(도어 SILL)	인조강화대리석	200*200
		바닥	자기질 타일	-
		창대석	인조강화대리석	-
	테라스	합성데크	-	-
수전	화장실	세면수전(거실화장실)	-	FA 1611_원홀
		세면수전(부부욕실)	-	FA 2611_원홀
		샤워 수전	-	FB0200NRC
	발코니수전	-	-	FS130T+PF038
	청소수전	-	-	FJ 7065

	세탁수전	-	FS 128T(온,냉)	-
	주방수전	-	FD 1742	-
	양변기	-	DC 212N	-
	세면기	-	DL 512	-
욕실 액세서리	휴지걸이	-	FA 6020TR	-
	수건걸이	-	FH1051-0GAK460AN	-
	슬라이드바	-	FH6445-0GAK291AF	-
	코너선반	-	FH1046-8HAK400AW	-
	캔초호	-	FH1062-0GAK490W	-
	비데	-	DB 4201	-
	욕실장	PS	몸체-전사 (은장무광색상)	
	욕실천정재	ABS평형	제작품	
가전기기	전기쿡탑	인덕션 3구	IHR-B310E	W590*D520
	후드	후드(침니형)	블랙글라스	
	쌀냉장고	빌트인 쌀냉장고	CFR-302B	W297*H815*D570
전등류	현관센서등	W280 * D280 * H65	LED 15W	-
	방등	W600 * D600	LED 50W	-
	복도등	W110Φ * H45	LED 5W	-
	화장실 매입등	W605 * D185 * H70	LED 25W	-
	샤워부스 등	Φ175 * H45	LED 15W	-
	주방등	W605 * D185 * H70	LED 25W	-
	팬던트등	W420 * D160	LED 8W*2	-
	거실등	W700 * D400	LED 50W*2	-
	파티너룸 등	W280 * D280 * H65	LED 15W	-
	대피공간 등	Φ230 * H95	LED 10W	-
배선기구	발코니 벽등	W125 * D150 * H200	LED 10W	-
	일괄소등	-	노벨	
총오토메이션	스위치/콘센트	-		-
	월패드	10인치	CSH-3 100	
	현관카메라	W97.6 * D15 * H148.8	CDC-200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 주요금액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	------	------

제 01292021-104-0001300 호	일금 이백일십칠억사천삼백구십사만원정 ₩21,743,940,000---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	---

○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약관 제1조)

공사는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보증약관 제2조)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 허위계약 ·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서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돋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공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공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공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 품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옵션 부

- 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 등)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공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공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공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 (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상복합주택분양계약(이하 "분양계약"이라 함)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공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공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 공동주택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진행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애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 변경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 (지상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는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됩니다.
- ※ 사업주체는 공급계약체결과 동시에 공급계약자에 대한 공급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 양도하고 공급계약자는 이를 이의 없이 승낙합니다.
-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 기타사항은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566-900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구조감리	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주)상지건축사사무소	(주)신한이엔씨	아크필구조	(주)신한이엔씨	(주)신한이엔씨

금액	180,400,000	22,000,000	13,200,000	12,100,000	12,100,000
----	-------------	------------	------------	------------	------------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별도 정산하지 않습니다)

■ 사업주체 및 사업관계자

구분	사업주체(시행수탁자)	시공자	수익자	위탁자
상호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	대양종합건설 주식회사	디와이에스플래닝 주식회사	안석 외 17인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7, 15층 (역삼동,하나금융그룹강남사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일로 485(심곡동,5층)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과학로 32, 엠동 1703-2호(송도동,송도테크노파크IT센터)	
법인등록번호	110111-1714818	120111-0078495	120111-1079286	

■ 관리형토지신탁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 ① 본 공급물건은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탁자 안석 외 17인, 수익자인 디와이에스플래닝 주식회사,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시공사 대양종합건설(주) 간 체결 한 관리형 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②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은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의 의거 신탁업무범위 내에서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매도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수익자인 디와이에스플래닝(주)가 부담하고 있음을 인지하여야 합니다.
- ③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수익자인 디와이에스플래닝(주)와 수탁자 (주)하나자산신탁 간 신탁해지 등의 사유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되는 경우(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 포함), 본 사업상 시행자의 지위에 기한 수탁자의 모든 권리·의무는 수익자인 디와이에스플래닝(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되며, 이에 따라 수탁자의 수분양자에 대한 모든 권리·의무도 공급계약서 변경 등 별도의 조치없이 수익자인 디와이에스플래닝(주)에게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④ 본 분양물건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⑤ 본 분양수입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⑥ 시행수탁자인 (주)하나자산신탁이 아닌 자와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⑦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매도인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21-54번지

■ 사이버 견본주택 인터넷 홈페이지 : www.songdo-aristaprime.com

■ 분양문의 : ☎1833-5626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함)

※ 자세한 공사범위 및 마감재는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